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등록 번호	20211291
	최초 등록일	2021-06-02
	최종 등록일	2025-12-31
	http://www.haagendazs.co.kr	

[하겐다즈]

정 보 공 개 서

[한국하겐-다즈(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한국하겐-다즈(주)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08-850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61-507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매장관리부(SHOP OPERATION) / 02-3218-849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내·외국 기업 여부
4. 인수·합병 여부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8.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하겐다즈 연혁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4. 최근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최근 3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보호
5.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해지, 수정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 활동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한국하겐-다 즈(주)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1991. 07. 24	1991. 08. 01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법인등록번호	110111 - 0794126	사업자등록번호	106 - 81 - 2896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백재연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권유정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백순석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백순진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이선호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발라크리쉬난 라다크리쉬난 (인도국인)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찰스브렌트로 빈스 (미합중국인)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존드류레이즈 (필리핀국인)	하겐다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유정, 백순석	02-508-8500	02-561-5079
미국본사	General Mills	Haagen-Dazs	330 University Avenue SE Minneapolis, MN 55414,		



	Asia Pte., Inc.		MS-R27-4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Ken Powell	1-763-293-215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하겐다즈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1) 명 칭	하겐다즈	
2) 상 호	하겐다즈 _____점	
3)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017719 등록번호 : 410018317
4) 광 고	대중매체(신문, 잡지 등) 및 옥외광고 등을 통한 다양한 광고, 홍보 활동 및 Promotion 실행	
5) 그 밖의 영업표지		The logo should always be placed on white within the cartouche. If printing in a single color the cartouche shape prints black.

		
		<p>If printing in a single color the letter logo shape prints black.</p>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6.1 ~ 2023. 5.31 (2023년도)	34,137,295	26,424,315	7,712,980	77,978,222	3,260,490	1,368,200
2023.6.1 ~ 2024. 5.31 (2024년도)	43,375,465	33,304,858	10,070,606	87,794,554	4,383,278	3,957,626
2024.6.1 ~ 2025. 5.31 (2025년도)	42,190,601	32,643,651	9,546,949	98,498,755	3,041,928	2,203,785

***당사의 미국본사와의 회계기준 일치를 위하여 사업연도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마감하였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 1~8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E-POS)로 추산한 금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백재연	이사	2023.09.15 ~ 현재	이사	관리
	권유정	대표이사	2024.09.23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백순석	대표이사	2022.10.21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백순진	이사	2005. 1. 1 ~ 현재	이사	관리
	이선호	감사	2005. 1. 1 ~ 현재	감사	감사
	발라크리쉬난라다크 리쉬난	기타비상무이사	2024.09.23 ~ 현재	기타비상무이사	관리
	찰스브렌트로빈스	기타비상무이사	2022.10.21 ~ 현재	기타비상무이사	관리
	존드류레이즈	기타비상무이사	2022.10.21 ~ 현재	기타비상무이사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	---------	---------

	상근	비상근	
2025년 5월 31일	1	7	2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하겐-다즈	가맹점 영업표지로 사용	출원일자 : 1991.03.15 등록일자 : 1992.10.07	출원번호 : 4119910001015 등록번호 : 4100177190000	제너럴 밀즈 마케팅, 인코포레이티드	2032.10.07 (2032.10.07)
 Häagen-Dazs	가맹점 영업표지로 사용	출원일자 : 1990.12.17 등록일자 : 1992.11.30	출원번호 : 4119900004393 등록번호 : 4100183170000	제너럴 밀즈 마케팅, 인코포레이티드	2032.11.30 (2032.11.3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인 “제너럴 밀즈 마케팅 Inc.”로 부터 상표 사용승낙을 받아 가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하겐다즈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1996년 12월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6년 5월 23일)

2. 하겐다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한국하겐-다즈(주)	하겐다즈	홍현정	2007. 8. 1 ~ 201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8 은성빌딩 7층
		서홍표	2010. 3. 1 ~ 201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한국하겐-다즈(주)	하겐다즈	지승열	2017. 10. ~ 2019.06.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한국하겐-다즈(주)	하겐다즈	김미조	2019. 06.24. ~ 2024. 09.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한국하겐-다즈(주)	하겐다즈	권유정, 백순석	2024. 09.23.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아남타워 6층)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빙수	아이스크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 5. 31.			2024. 5. 31.			2025. 5. 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8	8	0	7	7	0	5	5	0
서울	3	3	0	3	3	0	2	2	0
부산	2	2	0	1	1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2	2	0	2	2	0	2	2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1	1	0	1	1	0	1	1	0

5. 최근 3년간 하겐다즈 가맹점 수 변동 현황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년5월말	8	0	0	0	1	8

2024년5월말	8	0	1	0	0	7
2025년5월말	7	0	0	2	0	5

6. 하겐다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하겐다즈 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5 년 5 월말(전 사업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5 년 5 월말 가맹점 수	*2025 년 5 월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	309,726	18,219	513,089	22,650	144,861	13,169	
서울	2							* 5 곳 미만
부산	0							* 5 곳 미만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2							* 5 곳 미만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1							* 5 곳 미만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 매출액은 POS 상 매출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 영업 개월 수가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가맹점은 12 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5 년 5 월 말기준	5 개	3,290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하겐다즈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 사업년도에 하겐다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 판촉	(비공개)	(비공개)	7,726,084	7,726,084	0	
	(비공개)		61,450	61,450	0	
합계	-		7,787,534	7,787,534	0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e-비즈니스 사업단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02-2002-563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맹점사업자)의 예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 가맹금 예치신청서 접수
- 2) 은행 영업점에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수취
- 3)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esc.wooribank.com)에서 가맹금 입금 확인 및 가맹금 예치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하겐다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바엔키친프로퍼셔널, 길샘주방, 채움I&D, (주)피앤씨월드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USD 11,0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예치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점포개설 후 3개월 경과 시 -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	
교육비	3,300 천원	계약 후 예치	교육 미실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0			
(현금)보증금	30,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부가세 포함)
가입비	USD 11,000
교육비	3,300천원
(현금)보증금	30,000천원(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65m² 기준], 약20평(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필수설비	협력업체	60,000 ~100,000	3,000~5,000	입고완료 후 즉시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간판	협력업체	80,000 ~150,000	4,000~7,500	시공완료 후 즉시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특성에 따라 변동(일반점포 전면 5m기준)
최초 공급	가맹본부	11,000	-	가맹본부	상품 미	

상품 비용				및 협력업체의 정기 결제일	공급 시	
가구	가맹본부	10,000 ~25,000	-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의 정기 결제일	상품 미 공급 시	
POS	협력업체	1,650	-	계약시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 선정/구입	5,000 ~9,900	-	-	-	A/C 등
합계	-	167,650~29 7,550	8,383~14, 878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가 개설 가능한 입지를 직접 물색, 입지선정을 주도하고, 당사와 협의 후 입지를 최종 결정	가맹희망자가 직접 물색, 선정한 입지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담당자가 점포 개설 가능한 면적(최소 50m ²) 여부 및 기타 입지 현장실사(점포위치, 형태, 상권내역, 유동인구 파악 등) 후 입점 타당성 분석, 이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점주가 직접 근무하는 것이 원칙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1) 가맹점주를 포함하여 최소 2명이 가맹본부 교육 이수 필수
- (2) 종업원(아르바이트) 채용: 가맹본부 협력업체 및 기타 구인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채용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매장의 크기에 따라 주방, 설비 집기 비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가맹금의 분납

당사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하겐다즈 (가맹본부)	월 매출(VAT제외)액의 3.85%	매월 마감 후 익월 20일 현금지급		후불제로 반환되지 않음	
마케팅 수수료	하겐다즈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1.1%	매월 마감 후 익월 20일 현금지급		후불제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분담금	하겐다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내		행사(광고) 진행 후	
판촉분담금	하겐다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행사(판촉) 진행 후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 용	협력업체	교체/보수 등의 노후정도에 따라 다름	교체. 보수 후 5일 이내		후불제로 반환되지 않음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약하여 결정
점포환경개 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약정이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시스템 (POS)유지 비용	협력업체	없음	-	-	-	-
POS 무상A/S를 미포함한 수리의 경우 지급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5년 5월말 기준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5년 5월말 기준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점사업자는 하겐다즈 가맹점의 수입이나 판매에 관하여 국가에 제출한 연간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판매세 등에 관한 모든 신고서의 사본을 각각 신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또는 필요시	문의: 매장관리부 (02-3218-8494)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하겐다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한국하겐-다즈(주)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초기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비 및 물품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뉴얼 전체와 기타 모든 기밀정보를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하겐다즈 가맹사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하겐다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설비/장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격 경쟁에 따라 업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 간판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격 경쟁에 따라 업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격 경쟁에 따라 업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5) 필수품목(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격 경쟁, 경영환경에 따라 업체, 가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금액단위: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메뉴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이상 시정요구 후 2개월 뒤 계약해지	
기타 승인받은 상품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화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방법	비 고
별첨 메뉴리스트 참조	별첨 메뉴리스트 참조	가격 변동 시 사전 공문발송 및 POS 시스템상에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하겐다즈'와 동일한 업종(아이스크림 판매)	하겐다즈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지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 지하철 개통, 아파트단지는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서면 통지 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소매판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호텔, 편의점, 마트,

		케이크	슈퍼마켓, 개인카페, 타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등 일반 소매 판매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쿠팡	www.coupang.com	아이스크림 케이크	온라인쇼핑몰
	티몬	www.tmon.com	아이스크림 케이크	온라인쇼핑몰
	Auction	www.auction.co.kr	아이스크림 케이크	온라인쇼핑몰
	마켓컬리	www.kurly.com	아이스크림 케이크	온라인쇼핑몰
	굿 아이스크림	www.g-ice.co.kr	아이스크림 케이크	온라인쇼핑몰
	카카오모바일	Kakao app	아이스크림 케이크	온라인쇼핑몰
	그 외 다수의 오픈마켓	국내	아이스크림 케이크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현대 홈쇼핑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 길 34 (국내 방송)	아이스크림 완제품	홈쇼핑판매

전화권유판매	-	-	-	-
--------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5년 5월	1.6%	70.9%	0%	27.5%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5년 5월	97.9%	2.1%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하겐다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5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별첨F 4장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a) 가맹점 사업자가 청산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러한 선고가 구십 (90)일 내에 기각되지 않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행위나 파산신청을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또는 그 사업이나 자산의 상당부분에 파산관재인이 지정되고 이러한 결정이 구십 (9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11 장
(b)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어느 때라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본부나 관할 관청의 요청에 따른 수리, 청소, 보수나 재장식으로 인한 일시적인 중단 (즉,	

<p>삼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중단이나 5.11 조 (c)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요청에 의한 일 (1)개월 미만의 중단) 혹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영업요일 및 시간 이외의 폐점 시에는, 가맹본부가 본 계약서를 해지할 수 없다;</p> <p>(c) 가맹점 사업자가 하겐다즈 영업표지의 유효성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표지에 관해 8 조를 위반하는 경우;</p> <p>(d) 가맹점 사업자가 7 조에서 금지된 활동에 개입하거나 8.1 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기밀정보를 공개한 경우;</p> <p>(e) 가맹점 사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를 언급한 통지를 수령한 이후 구십 (90)일 내에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들이나 승인된 공급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p> <p>(f) 가맹점 사업자가 5.3 조 (d)항 하에서 요구되는 매장 채신 또는 개조를 중대한 측면에서 시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고 불이행통지의 송달 이후 육십 (60)일 이내에 그러한 불이행을 개선하지 못한 경우;</p> <p>(g) 가맹점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불이행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이후 오 (5)일 이내에 그러한 불이행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십이 (12)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한 세 (3)차례 다음의 불이행을 범하는 경우 (불이행이 적시에 개선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 (i) 가맹점 사업자가 제품사양 (허가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포함), 청결, 보건 및/또는 위생과 관련하여 매뉴얼에 포함된 운영기준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혹은 (ii)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표, 서비스마크, 슬로건, 홍보/광고자료를 사용하는 경우;</p> <p>(h) 가맹점 사업자가 본 계약서의 여타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가 전달된 지 삼십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못하였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시정이 불가능한 본 계약서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p> <p>(i) 평가기간 내에 행해진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가 최소 ESP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ESP 감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p> <p>(i) 평가 기간 이내에 삼 (3)회 이상의 ESP 감사가 진행된 경</p>	
---	--

<p>우, 최소한 세 (3)번의 ESP 감사를 적절히 통과하지 못한 경우,</p> <p>(ii) 평가 기간 이내에 삼 (3)회 미만의 ESP 감사가 진행된 경우, 모든 ESP 감사를 적절히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p> <p>(j) 가맹점 사업자가 6개월의 비밀감사 기간 내 4회 이상 최소 비밀감사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비밀감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p> <p>(k) 가맹점 사업자가 12개월 기간 내에 (상기한 하위 항 (g)에 명시된 위반 외에) 본 계약의 어떤 조건이든 3회 위반한 경우, 이러한 위반이 중대한 것이든 아니든, 그리고 서면으로 이러한 불이행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이러한 위반을 시정하든 하지 않든 적용된다.</p> <p>(l) (개인인 경우) 가맹점 사업자, (파트너십인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파트너들 중 한 명, 혹은 (법인인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이사들 중 한 명이 삼 (3)개월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p> <p>(m) 위 사항 중 어떠한 사항이라도 점장이나 위의 (k)항에 기술된 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경우;</p> <p>(n) 가맹점 사업자가 여타 다른 계약서 상에서 하겐다즈에게 지닌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시정하지 못한 경우;</p> <p>(o) 가맹점 사업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매장과 관련된 임대계약서의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경우, ii.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장관련 제한조항이나 여타 소유권 관련 사안을 위반한 경우, 혹은 iii.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의견으로 볼 때,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매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장의 이용과 향유에 관련된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p>(p) 가맹점 사업자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절차나 직원훈련을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을 잘못된 경우;</p> <p>(q) 어느 당사자가 매장에 관해 선취특권이나 모기지를 강제 또는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고 그러한 선취특권이 삼십 (30)일</p>	
---	--

이내에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또는	
(r)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이전에 개입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서 별첨F 3장 및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가 본 계약서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통지를 받은 이후 삼십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못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본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11 장 11.2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인수하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 내부품의 결제를 득한 후 시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대리권: 1. 행사가능기간: 가맹계약기간 내	

업무위탁	불가능	-	2. 권한범위: 가맹계약 행위 외의 점포운영 권한 3. 구체적인 절차: 해당사항 없음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하겐다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아이스크림 판매업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하겐다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 12시간 이상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점, 매장형태 및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분기	본사 매장운영팀	
친절도	매장 암행방문(위탁업체) → 주문 → 친절도 확인 → 점검리스트 작성 → 완료	1회 이상/분기	본사 매장운영팀	
품질 관리 (ESP)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FSQ팀 및 위탁업체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하겐다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판촉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또는 행사의 내용에 따라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부담 시: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또는 행사의 내용에 따라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원칙적으로 5:5이지만, 행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180일 내외	18p~2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180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주변 가맹점 정보 제공 - 계약서 제공(가맹계약 14일 전 제공)	D-170~17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150~169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100~149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99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p><분할지급 시 절차></p> <p>○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p> <p>(1차: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서비스,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약)	문의: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하겐다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교육(본사)

교육 시간	구분	교육 내용	장 소
9:00-9:30	운영	교육 내용 및 일정소개	본사 교육장 또는 매장
		하겐다즈 역사	
		매장 위치	
		매장 형태	
9:40-10:10	마케팅	HD 제품	
		하겐다즈 마케팅 활동	
		Shop& Retail	
		General mills 소개	
		아이스크림 Sample 시식	
		하겐다즈 로고 및 디자인 소개	
		하겐다즈 MD 상품 소개	
10:20-11:00	물류	물류절차, 처리	
		발주 및 반품	
11:10-11:30	회계	로열티, 제품대 (A/R Balance)	
		세금계산서 관련	

		상품권 구매 및 입금	
11:30-12:00	운영	E.S.P	
		미스터리 샤퍼	
		고객서비스	

2) 2차 교육(현장실습): 5일~7일

교육 내용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겐다즈의 소개 - 기본적인 아이스크림 교육 - Flavor 별 Testing - Dipping Line 교육 - 올바른 스쿠픽 - 메뉴 및 용기별 가격, 중량 - 포장방법, 아이스 사용법 - PNC 교육 - 메뉴입력방법, 계산방법(카드/현금) - 적립카드 사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점검 방법 - 고객응대 방법, 주문받는 방법, 메뉴서브교육, 테이블 셋팅 교육 - 개인 청결, 위생 교육 - E.S.P 및 미스터리교육, 알러젠 교육 - 아이스크림 관리 방법, 이콜랩 세제교육 - 오프닝 준비교육, 마감작업 교육 - 기기 및 제품온도 측정, 커피레시피 위주 재교육 및 실무 기타 음료 교육 - 크루선발, 교육, 인력 관리 교육, 관련서류 보관 교육 - 배송 체크교육, 상세 메뉴교육 등 주방업무 자재발주 및 보관요령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및 메뉴교육 	

※ 교육시간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하겐다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이상(본사, 현장)	최초 교육비(330만원)	최초 계약 시 이수 부가세포함, 기타 부대비용 발생 될 수 있음
수시 교육	없음		신 메뉴 교육 등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와 협의 하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5년 5월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5년 5월말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매장 운영팀(02-508-85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 장소			
수령 확인	이곳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세요.		

제공자

가맹본부명: _____

제공자명: _____ (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 장소			
수령 확인	이곳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세요.		

제공자

가맹본부명:

제공자명:

(인)

[별지 서식]

인근점포 정보 리스트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가맹본부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메뉴리스트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소그룹	메뉴명	소비자 판매가격	비고
별크 아이스 크림	Scoops	1 스쿱 컵/콘	4,900	
		2 스쿱 컵/콘	9,000	
		3 스쿱컵	10,800	
	Pint	파인트	14,000	
	Quart	쿼트	24,500	
완제품	C/S	크리스피샌드위치(그린티)	4,800	
		크리스피샌드위치(카라멜)	4,800	
	Cone	그린티크런치아몬드콘	4,800	
		바닐라카라멜아몬드콘	4,800	
		초콜릿축아몬드콘	4,800	
	Single bar	(바)초코렛 축 아몬드	4,800	
		(바)망고&라즈베리	4,800	
		(바)스트로베리 크림	4,800	
		(바)쿠키 앤 크림	4,800	
		(바)바닐라 카라멜 아몬드	4,800	
		(바)마카다미아 너트 브리틀	4,800	
		(바)그린티 아몬드	4,800	
		(바)브라우니마키아또	4,800	
크리에 이션 메뉴	Regular	스윗 딜라이트	13,000	
		와플드림	13,500	
		브라우니셀러브레이션	14,500	
		치즈케이크 플레저	14,500	
		티타임 브리오슈	14,500	Café 메뉴
		바나나스플릿	13,500	

		파라다이스	17,000		
		딥 디자인어	9,800		
		블루베리요거트	11,800		
	Seasonal	레드빈팻	9,500		
		녹차빙수	13,000		
		초코빙수	13,000		
		바닐라빙수	13,000		
		블루베리빙수	13,000		
		바닐라빙수(컵)	7,000		
		블루베리빙수(컵)	7,000		
		치즈케이크빙수	13,000		
		키위망고빙수	13,000		
		빙수아이스크림추가	3,000		
Special	아포가또	8,500			
	퐁듀세트	32,000			
크리에이션 메뉴	TO Creation	컵브라우니	7,400		
		컵와플	7,400		
		쿠키&크림 파르페 크런치	8,600		
		후르츠 파르페 크런치	8,600		
		요거트 파르페 크런치	8,600		
		브라우니마키아또파르페	8,600		
		티모멘트파르페	8,600		
드링크	I.C Drink	스파클링라즈베리	7,200		
		스파클링레몬	7,200		
		스파클링망고	7,200		
		베리쿨	7,900		
		스노우아이스딸기	7,400		
		스노우아이스초코	7,400		
		스노우아이스그린티	7,400		
		스노우아이스커피	7,400		
		스노우아이스바닐라	7,400		
		벨지안라떼	7,400		
		벨지안라떼아이스	7,900		
		리얼초코드링크	7,400		
		리얼초코아이스	7,900		
		바닐라라떼	7,400		

		바닐라라떼아이스	7,900	
		둘세데레체아이스크림마끼아또	7,400	
		둘세데레체아이스크림마끼아또아이스	7,900	
		그린티라떼	7,400	
		그린티라떼아이스	7,900	
		블루베리&크림 스무디	8,500	
		피넛버터라떼	7,400	
		피넛버터라떼아이스	7,900	
		마카다미아넛크런치	7,900	
		브라우니마끼아또크런치	7,900	
		티라떼크런치	7,900	
		브라우니마끼아또라떼	7,400	
		티아이스크림라떼	7,400	
		마카다미아넛라떼	7,400	
드링크	Coffee	카페아메리카노	4,000	
		아이스아메리카노	4,500	
		카페라떼	4,500	
		아이스라떼	5,000	
		카페모카	4,800	
		아이스모카	5,300	
		카푸치노	4,500	
		아이스카푸치노	5,000	
		에스프레소(D)	4,500	
		에스프레소(S)	4,000	
	Tea	녹차	4,500	
		홍차(얼그레이)	4,500	
		아이스녹차	5,000	
		아이스얼그레이	5,000	
		다즐링차	4,500	
		아이스다즐링차	5,000	
		허브차	4,500	
		아이스허브차	5,000	
	Beverage	오가닉 주스	5,500	
		에비앙	2,000	
페리에레몬		3,300		
페리에라임		3,300		

아이스 크림 케이크	Middle	블러싱하트	42,000	
		초콜릿컬스	42,000	
		루비템테이션	42,000	
		펭귄	42,000	
		솔레일	45,000	
		퍼펙트기프트	45,000	
	Special	레인보우로그	45,000	
	Large - Kid	리틀포레스트	52,000	
	Gifting	마카롱선물세트	36,900	
컵케이크선물세트		34,900		
그 외	Bakery	퍼지브라우니	4,000	
		피넛버터 쉼이 쿠키	1,500	
		초코칩 쉼이 쿠키	1,500	
		치즈케이크	5,000	
	Topping	빙수팔추가	1,000	
		슈가콘	300	
		에스프레소샷	500	
		소스(초코렛,카라멜,라즈베리)	500	
		냉동과일(라즈베리, 블루베리, 바나나)	500	
		그 외 (브라우니, 와플쿠키,아몬드슬라이스)	500	
	Merchan dising	2017 리치머그컵	8,000	
		HD 스페셜쿨러백	8,000	
		HD 플레이버 라떼 컵	12,000	
		콘 에코백	5,000	